

(參 照)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39
----------	-----

제안년월일 : 1997.11.4.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박정구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97.11.4)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

III.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며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인바,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표를 시민앞에 밝히기 위해 제정된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건전한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40
----------	-----

제안년월일 : 1997.11.4.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와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박정구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97.11.4)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

III. 제안이유

'91.7.8.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와 '95.7.12.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등 자치권의 제약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941
----------	-----

제안년월일 : 1997.11.4.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관련업무지원 또는 처리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박정구의원 외 1인이 서면동